

<의안번호 제2007-11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6. 19.

2. 개정이유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의 원활한 보건업무의 추진과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전담기구(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
- 나.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 일반직 7급 중
 - 보건소 : 15명 ⇒ 14명(감1) - 본청 : 81명 ⇒ 82명(증1)
- 다.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 일반직 8급 중
 - 사업소 : 9명 ⇒ 8명(감1) - 본청 : 49명 ⇒ 50명(증1)
- 라. 혁신분권업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안 부칙제2항)
 - 존속기간 : 2007. 6. 30까지 ⇒ 2008. 6. 30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예산과 다수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

5.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직 1명 증원과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을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혁신분권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별표에서 보건소 1명과 사업소 1명을 감하여 본청 2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2007. 4. 6. 경상남도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분야는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원조사 등의

연계·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생활 전담부서에 우선 보건직 정원(1명)을 확보하여 서비스 연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를 후속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것이었음.

-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의해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은 총 5명이 필요하여 본청에서 4명을 자체조정하고, 1명은 거창사건관리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전에 정원조정 미이행에 대하여는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 2006. 12. 14 : 경상남도과 위수탁 계약

2006. 12. 20 : 금원산 자연휴양림 인력배치

- 부칙 제2조(한시정원)에서 혁신분권업무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최초 2004. 4. 2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 시달에 따라 '07. 6. 30까지 존속시한을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07.3. 21.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간(당초 2007. 6. 30→2008. 6. 30) 연장운영토록 통보하여 옴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